

영등포구의회
제16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9. 1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1호로 2011년 9월 0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“내부고발자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”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1 종합청렴도 평가 전국 지자체 최상위권 도달 및 서울시 청렴 1등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부조리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
○ 신고자의 보호(안 제11조)

- 신고 행위로 신분상·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, 감사 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, 관계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,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신설

○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중 “내부고발자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”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-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·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, 감사 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·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함.
-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(신분보장 등) 제64조(신변보호 등), 제65조(협조자 보호)를 근거로 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,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,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62조(신분보장 등)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·단체·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·전직·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·허가 등의 취소,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·허가,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,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64조(신변보호 등)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, 관할 지방경찰청장,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5조(협조자 보호)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·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.